



제410회국회(정기회)
제6차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장애인을 위한 감염병 격리 치료시설 마련 >
■ 안규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4969호)

2023.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조 문 상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장애인을 위한 감염병 격리 치료시설 마련(안규백의원안)	2

I. 개요

1. 안규백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4969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안규백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3. 9. 27.

(3) 회 부 일 : 2023. 10. 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으로 많은 확진환자가 격리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장애인이 확진되는 경우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격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장애인을 위한 격리·치료시설이 부족하여 확진환자인 장애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에 걸린 장애인을 적절하게 관리·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격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장애인을 위한 격리 치료시설 마련(안규백의원안)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감염병 격리 치료시설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현행	개정안
제24조(안전대책 강구) (생략) <신설>	제24조(안전대책 강구 등) ①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에 걸린 장애인을 적절하게 관리·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격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검토의견

- 2019년 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이하 “코로나19”라고 함)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2020년부터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격리 병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여러 차례 편성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있었음.¹⁾

1) 2020년 4회, 2021년 2회, 2022년 2회 추경 예산을 편성하였음

□ 장애인을 위한 감염병전담병상은 국립재활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였고,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 유입된 이후 병상을 확충하였던 바 있음.²⁾

- 이후 단계적으로 병상을 감축하다가 감염병 전담병원을 지정해 제하였음.³⁾ 현재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로 하향 조정하여 대응 중인바, 향후 감염병 유행 시 활용할 음압병실을 국립재활원 내 구축 중임.⁴⁾

또한,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장애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응하기 위해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마련(2020. 6.)하였음.⁵⁾

□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격리 치료시설을 마련하고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장애인복지법」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장애인에 특화된 감염병 대응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다만,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감염병 대응에 관한 일반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함)에 장애인을 포함한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를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취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이미 마련된 바 있으므로⁶⁾ 개정안의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음.

2) 정신보건시설 확충(3345-300) 사업에서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1542-307)으로 4억 2,700만원을 이용하여 (2021. 12. 20.) 4억 1,500만원을 집행함.

3) 23→51병상 확충(2022. 1. 23.), 51→23병상(4. 18.), 23→10병상 감축(5. 2.), 지정 해제(5. 30.)

4) 2024년까지 28병상을 설치할 예정임.

5) 현재는 제2판(2021. 4. 개정)을 사용하고 있음.

- 개정안이 마련된 후 해당 규정이 한 차례 개정되면서 감염취약 계층에 장애인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었음.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수립, 시행하는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는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유형별 보호조치 방안 및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별, 전과상황별 대응방안이 포함되어야 함.⁷⁾

다.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신중검토) 장애인은 감염취약 계층으로 장애 특성에 맞는 감염병 치료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함. 다만, 장애인 등 감염취약 계층에 대한 유형별 보호조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필요성이 대두되어 「감염병예방법」에 규정되었음. 따라서 현행법에 장애인 특성에 맞는 감염병 치료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근거가 있으므로 개정 실익은 적을 것으로 판단됨.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이하 “감염취약계층”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의료·방역 물품(「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으로 한정한다)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5.>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 3. 9.>

③ 제1항에 따른 감염병의 종류, 감염취약계층의 범위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3. 9.>

[본조신설 2020. 3. 4.]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이하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의2.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유형별 보호조치 방안 및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별·전과상황별 대응방안

□ (충청북도) 장애인복지법에 보건의료 전문영역인 감염병 격리 및 치료 관련 조문은 부적합함. 감염병 발생 시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포괄하는 격리시설 지정 및 기준, 치료 대책 등을 일원화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을 통한 접근이 개정안 취지 실현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문 의 처
02)6788-5502